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1
------	-----

제출년월일 : 1999. 10. 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 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 (안제 7조)
- 수입증지 판매 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 폐지 (안제 9조)
-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이나 위치 변경 및 해지시 1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계약 변경 토록 완화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등)
- 도세정 13388-10704('99. 8.12) :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표준안
-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

4.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 99-108호 ('99. 6.23~7.12)

5.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8조 본문 중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판매인 계약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조항 중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를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판매인 지정) ① 증지는 군수,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 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u></p> <p>1 ~ 4 (생략)</p> <p>제9조 (판매인의 지정신청) ① 판매인의 지정 <u>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85. 6.26조 905호></p>	<p>⑥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p> <p>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u>판매인이 될 수 없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 <삭 제></p>

현행	개정안
<p>④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및 판매소의 위치를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p> <p>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 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13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② <u>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u></p> <p>③ <u>읍면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14조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u>제14조 (판매인 계약 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u> <u>2. 판매인이 사망한 때</u> <u>3.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u> <u>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u> 	<p>제15조 <삭 제></p>
<p><u>제25조 (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25조 (증지의 환매) ①----- ----- 판매인이 사망한 후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u>별지 제1호서식(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u>	<u>별지 제1호서식(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u>
<u>별지 제2호서식(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u>	〈삭제〉
<u>별지 제8호서식(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 신청서)</u>	〈삭제〉
<u>별지 제9호서식(수입증지 판매 신고서)</u>	〈삭제〉